



성 매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데다 성 매매 대상이 되는 청소년들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부산지방경찰청이 올들어 적발한 청소년 성 매매 사건을 분석한 결과 성 매매 대상이 된 청소년 30명 가운데 15~16세가 14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17~18세 청소년이 10명이며 13~14세 청소년이 6명이었다. 지난해와 지지난 해에는 17~18세 청소년이 가장 많았었다.

전문가들은 예년엔 고교를 졸업하거나 가출한 청소년들이 주점 등 유흥업소에 취업해 성 매매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청소년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을 통한 성 매매가

많아지면서 대상 청소년들의 연령이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터넷 통한 청소년 성 매매 급증

경기지방경찰청의 단속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만난 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성 매매 사범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지난 6월말까지 인터넷을 이용한 성 매매 사범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181명이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적발된 149명에 비해 21%나 증가한 수치이다. 그러니까 인터넷이 청소년 성 매매의 주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성 매매에 관한 각종 조사를 보면 우리 사회에서 성 매매는 범법행위인데도 죄책감 없이 이뤄지고 있고 남성의 절반 가까이가 성 매매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가 기존의 윤락행위방지법을 대신해 새로운 법을 마련했다. 이 법이 바로 9월 23일부터 시행된 '성 매매 알선등 처벌법'과 '성 매매 피해자 보호법'이다. 여성계의 오랜 숙원이 반영된 이 법은 과거의 윤락행위방지법을 처벌과 피해자 보호 등 2개로 나눈 것으로 성을 구매한 남성에게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성(性) 매매 뿌리 뽑아야



이광호 KBS 해설위원

비자발적 성 매매 종사자는 피해자 대우

이 법에 따르면 성 매매 장소 제공 등 성 매매 알선 행위를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특히 성 매매 알선행위를 한 사람이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가 된다. 또한 '미녀 00명 항시 대기' 등 성 매매 소개와 알선 광고는 그동안 처벌이 어려웠지만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됐다. 그전에는 안마사술소 등 영업을 하는 사람이 윤락 알선 등을 한 사실이 3차례 적발되면 영업폐쇄를 할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알선, 강요, 광고 등으로 한차례만 적발돼도 영업정지나 폐쇄를 할 수 있다. 특히 이 법률의 시행으로 초·중·고교에서는 성매매 예방을 위해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돼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윤락행위방지법에 따라 피의자 취급을 받아온 성 매매 여성(윤락녀)이 앞으로는 어쩔 수 없이 성매매에 종사했을 경우에는 피해자 대우를 받게 된다. 또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이라도 성매매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을 경우에는 강제출국 등을 당하지 않게 된다.

1904년 국내에 공창제 처음 등장

성 매매(윤락)에 관한 법률은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 왔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처음 공창제(公娼制)가 등장한 것은 일제시대 때이다. 일제는 1904년 10월 일본 공사관 산하 경성영사관련 제3호로 사실상 서울에서 처음으로 매춘업을 허락하면서 자국의 공창제를 국내에 널리 퍼뜨렸다. 1916년 3월에는 총독부 경무총감부령 제4호를 만들어 전국적으로 단일한 단속기준을 만들고 정식으로 공창제를 인정했다. 그러나 여성계의 꾸준한 노력으로 1948년 2월에 공창제는 폐지되었다.

이후 1961년 11월 윤락행위방지법을 제정함으로써

써 '처벌받는 윤락녀'라는 개념이 도입되었다. 이 법은 1995년 1월 전문 개정을 포함해 7차례 개정돼 내려오다가 2000년 9월 군산 윤락가 화재 참사 사건이 나면서 윤락녀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온 계기가 돼 성 매매 보호법안이 마련되게 됐다. 이 법의 시행으로 그동안 여성의 도덕적 타락을 뜻하던 부정적 의미의 윤락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지고 성 매매라는 가치 중립적인 용어가 사용되게 된 것이다.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창녀'가 처벌대상인 '윤락녀' 취급을 받다가 국가의 보호대상인 '성 매매 피해자'로 바뀌는데 100년이 걸린 셈이다.

성 매매 거래 규모 연간 24조원

성 매매는 현행법상으로 엄연히 불법이며 범죄행위지만 국내총생산(GDP)의 4.1%인 24조원의 거래 규모로 산업화하고 있다. 성 구매자가 하루 평균 35만 8천여 명에 달하고 최소 33만명의 여성이 성매매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우리 사회의 성매매 시장은 남성 위주의 성문화 이데올로기와 성의 상품화를 부추기는 소비 자본주의가 결합되어 나타난 결과이다. 성 매매 등을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한 범죄 등을 저지른 성 매매 알선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 나온 것은 비록 만사지탄의 감이 있지만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성 매매 알선업자들이 사라질 것 같지는 않다. 성 매매 행위를 '필요악'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도 큰 문제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중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의 성 인식을 바꾸는 일이다. 여성의 성적 표출은 악덕으로 치부되고 남성의 성적 표출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합리화하는 남성중심의 성문화부터 바뀌어야 한다. 이 같은 성문화가 온존하는 한 젊은 여성들이 성의 도구로 거래되는 성매매 산업은 번창할 것이다. 결국 성 매매 근절을 위해서는 남성주도의 사고방식부터 탈피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Z**